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장 주소령, 박경숙 주무관(02-2110-5328)

카메룬 다이아몬드 관련, 국제평화고시 개정
- 다이아몬드 수출입 가능국으로 추가, 개별수출입허가는 별도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카메룬이 킴벌리프로세스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(8월)됨에 따라, 카메룬을 우리나라와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·수입이 가능한 국가로 추가한 「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」 고시를 '12.10.5(금)부터 개정, 시행할 예정임

《킴벌리프로세스 개요》

- (의의)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 수출로 야기되는 인권유린, 국민의 안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국제인증체제 (UN총회의 결의안 55/56의 권고사항)
- (약정) 현재 회원국 간에만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를 허용 (77개국)
- (회원가입) 추적, 밀수방지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대상

□ 동 고시 개정은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의 불법거래 방지 및 국제평화·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인증체제(킴벌리프로세스) 합의내용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

- 투명한 절차를 통해 카메룬과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며, 개별업체에 대한 포괄적 수출입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
□ 향후 특정업체가 카메룬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, 수입 건별로 수입물품에 대한 카메룬 정부의 수출허가(certificate)를 받아야 함

- 또한 세관장은 지식경제부 고시 "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" 제2-12조(세관장의 권한과 책임)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에 카메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의 동봉 여부 및 수입물품과 증명서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, 수입물품을 통관 함

□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가입의 의미는 카메룬 정부가 킴벌리프로세스가 요구하는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절차의 투명성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, 킴벌리프로세스 가입 심사시 회원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업성 등은 고려하지 않음

- 즉 킴벌리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제도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차별없이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

* 인증제도 요건 : 내부통제시스템 (추적, 기록보관, 밀수방지와 관련한 법률제정 등) 구축

□ 지식경제부는 "동 고시 개정은 특정업체의 사업 전망과는 무관하게 국제체제 합의내용의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이므로,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인하여 투자자나 일반인의 오해 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"라고 밝혔음